

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(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신고인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제 조 업 자	회사명(국가)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	제 조 자 명	제 품 명	
	기본모델명	정 격	
	파생모델명(필요시 별지사용)	적용안전기준	
신청모델 KS인증 보유 여부	미보유()	* 미보유 시 공급자적합성확인·신고 필요	
	보유()	KS인증번호	* (전기용품)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(생활용품)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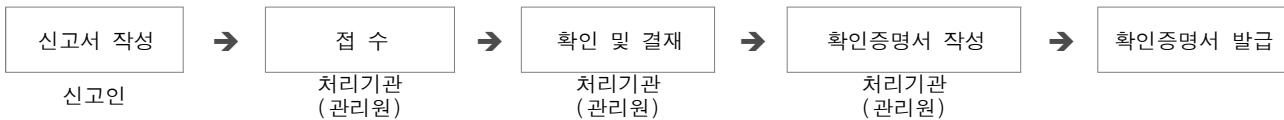
신 고 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수수료
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(첨부서류는 제외함)	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
※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.

처 리 절 차



발급번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

직인